

의안번호	제 142 호
의 결 연 월 일	2007년 9월 일 (제 263 회)

**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· 징수
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이종호의원 외 6인
발의연월일	2007년 9월 3일

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·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종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7년 9월 3일
 발의자 : 이종호 · 이필용 · 김환동
 박재국 · 연만흠 · 강태원
 조영재(7인)

제정이유

이 조례의 상위 법령인 「학교용지획보 등에 관한 특례법(2005.3.24)」과 「지방자치법(2007.5.11)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조문의 문구를 정리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법률제명 및 조문의 정비(안 제1조)

- (1) 「학교용지획보에 관한 특례법」 ⇒ 「학교용지획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(2005.3.24 개정)
- (2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⇒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(2007.5.11 개정)

나. 「학교용지획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5조 및 제10조의 개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대상자가 '분양 받는 자'에서 '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'로 변경됨에 따라 개발사업자의 분양공고시 부담금의 부과 · 징수 공고 및 공고를 하지 않을 시 부과하던 과태료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2조 및 제6조).

다.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정리(안 제3조).

참고자료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- (1) 학교용지획보 등에 관한 특례법
- (2) 학교용지획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- (3) 지방자치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.

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·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·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학교용지획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과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부담금의 부과·징수) ①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학교용지부담금(이하 "부담금"이라 한다)을 부과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 1조(목적)</u> 이 조례는 「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동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,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하며,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u>제 2조(부담금의 부과·징수공고의 절차)</u></p> <p>①부담금의 부과징수공고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. 단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일간신문에 게재 2. 견본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게시 3.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은 장소에 게시 <p>②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안내문 제작이나 분양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부담금의 부과대상자 2.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평형별 납부금액 	<p><u>제 1조(목적)</u> 이 조례는 「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과 「지방자치법」 제126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(삭제)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u>3.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</u> <u>4. 부담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</u> <u>5.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.</u>	
<u>③개발사업 및 분양계획의 승인권</u> <u>자가 개발사업계획 또는 분양계획</u> <u>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할 때에는</u> <u>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승</u> <u>인하여야 한다.</u>	
<u>제 3조(부담금의 부과·징수) ①도지</u> <u>사는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규칙</u> <u>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납부고지서</u> <u>를 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 2조에</u> <u>의하여 부과·징수사무가 시장·군</u> <u>수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·군</u> <u>수 명의로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</u> <u>야 한다.</u> <u>②(생략)</u> <u>③(생략)</u>	<u>제 3조(부담금의 부과·징수) ①충청</u> <u>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는</u> <u>학교용지부담금(이하 “부담금”이라</u> <u>한다)을 부과할 때에는 규칙이 정</u> <u>하는 서식에 의거 납부고지서를 고</u> <u>지하여야 한다.</u> ----- ----- ----- <u>②(현행과 같음)</u> <u>③(현행과 같음)</u>
<u>제 6조(과태료의 부과·징수) ①도지</u> <u>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</u> <u>해 위반행위를 조사·확인한 후 위</u> <u>반사실·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</u> <u>명시하여 20일이내에 과태료처분대</u> <u>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위반사</u> <u>실조사서, 과태료 등 필요한 서식은</u> <u>규칙으로 정한다.</u>	<u>(삭제)</u>

현 행	개 정 안
<p><u>②과태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p>1.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개발 사업시행자 : 5백만원</p> <p>2. 500세대 이상 1,000세대 미만의 개 발 사업시행자 : 7백만원</p> <p>3. 1,0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 : 1천만원</p> <p><u>③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 3조</u> 규정을 준용한다.</p>	

관계법령 발췌

□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
현 행	개 정 전
<p>第5條(負擔金의 賦課·徵收) ①시 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5.3.24></p> <p>1.~6. (생략)</p> <p>②삭제 <2005.3.24></p> <p>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의 賦課·徵收의 방법·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5.3.24></p> <p>④(생략)</p>	<p>第5條(負擔金의 賦課 徵收) ①市 道知事는 學校用地의 確보를 위하여 開發事業地域에서 單獨住宅 建築을 위한 土地(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移住用 宅地로 分讓받은 土地를 제외한다) 또는 共同住宅(賃貸住宅을 제외한다 등을 分讓 받는 者에게 負擔金 을 賦課 徵收 할 수 있다. 다만,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받는 자(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한한다)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2.2.4, 2002.12.5, 2003.5.29></p> <p>②開發事業施行者は 開發事業 승인에 따른 土地 또는 住宅의 分讓公告에 負擔金의 賦課·徵收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의 賦課·徵收의 방법·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,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의 방법·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市·道의 條例로 정한다.</p> <p>[전문개정 2000.1.28]</p>

현 행	개 정 전
<p>제10조(공사중지 요청) 교육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개발사업계획의 허가·인가 또는 승인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「건축법」 제69조, 「도시개발법」 제73조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7조, 「주택법」 제91조,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23조 및 「잔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에 의한 공사중지를 당해 개발사업계획의 허가·인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[전문개정 2005.3.24]</p>	<p>第10條(過怠料) ①第 3條第 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負擔金의 賦課·徵收에 관한 사항을 公告하지 아니한 開發事業施行者は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.</p> <p>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が 賦課·徵收한다.</p> <p>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市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.</p> <p>④~⑤(생략)</p> <p>[본조신설 2000.1.28]</p>

제9조(권한의 위임) ①시·도지사는 당해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(생략)

□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

제5조의2(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·징수의 절차 등)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(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후 7일 이내)에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시·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·납부기한·납부방법·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당해 토지 또는 공동주택등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12.14>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.

④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·징수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00.12.20]

지방자치법

제126조(회계의 구분)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